개인정보 보호지침

제정 2012. 8.22 개정 2013. 7.24 시행 2013. 7.26 개정 2013. 8.27 시행 2013. 8.28 개정 2015. 5.19 시행 2015. 5.27 개정 2017. 7.31 시행 2017. 8. 1 개정 2019.12.26 시행 2019.12.27 개정 2024. 5.16 시행 2024. 5.17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31.>
-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전자적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부서 및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19.><개정 2017.7.31.><개정 2019.12.26.><개정 2024.5.16.>
 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 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2.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 기(破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 物)을 말한다.
-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 6.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란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파일을 보유·이용·제공하는 취급 부서의 장을 말한다.
- 7. "개인정보 취급자"란 공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수탁자 등을 말한다.
- 8. "고유식별정보"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 다) 제19조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를 말한다.

- 9.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 9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착용형 장치, 휴대형 장치, 부착·거치형 장치를 말한다.
- 10.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 11. "공개된 장소"라 함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 12. "친목단체"란 학교, 지역, 기업,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단위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자원봉사, 취미, 정치, 종교 등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 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각종 동창회, 동호회, 향우회, 동아리 등의 모임을 말한다.
- 13. "개인영상정보"란 지침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 14.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 정보 보호 업무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공사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 ②공사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5.16.>
 - ③공사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 공사는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개정 2024.5.16.>
 - ⑤공사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 ⑥공사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 ⑦공사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7.7.31.>

⑧공사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4.5.16.>

제2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신설 2017.7.31.>

- 제5조(개인정보의 수집) ①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②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개정 2024.5.16.>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사가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공사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③공사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이하 "명함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명함 등을 제공하는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 ④공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이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개정 2024.5.16.>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 ⑤공사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7.7.31.>
- ⑥공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7.7.31.>

제6조(동의 항목 및 동의 받는 방법) ①공사는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5.16.>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②공사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처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③공사가 친목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 1. 친목단체의 가입을 위한 성명, 연락처 및 친목단체의 회칙으로 정한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와 관련된 인적 사항
- 2. 친목단체의 회비 등 친목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납부현황에 관한사항
- 3. 친목단체의 활동에 대한 구성원의 참석여부 및 활동내용에 관한 사항
- 4. 기타 친목단체의 구성원 상호간의 친교와 화합을 위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생일, 취향 및 가족의 애경사 등에 관한 사항

- ④삭제 <2015.5.19.>
- ⑤공사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7.7.31.> <개정 2019.12.26.>
- ⑥공사는 정보주체가 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 및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7.31.〉〈개정 2019.12.26.〉〈개정 2024.5.16.〉
- 제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공사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제5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③"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공사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정보주체의 대리인(명백히 대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과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4.5.16.>
- ④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31.><개정 2024.5.16.>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제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공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5.16.>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

- 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31.><개정 2024.5.16.>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③공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7.7.31.〉 〈개정 2019.12.26.〉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④공사는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개정 2024.5.16.>
- ⑤공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⑥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제공하는 경우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하여 이용하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 ⑦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책임관 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 ⑧공사는 외부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정보를 요청기관에게 제공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대장'에 기록한다. <신설 2017.7.31.> <개정 2019.12.26.>

[제목개정 2017.7.31]

제9조 삭제 <2017.7.31.>

제10조 삭제 <2017.7.31.>

제2절 개인정보 처리 제한<신설 2017.7.31.>

- 제1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 1. 정보주체에게 제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

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본조신설 2015.5.19]

- 제10조의3(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①제1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 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9.12.26.><개정 2024.5.16.>
 -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 나 허용한 경우
 -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②공사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 ③공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5.19.]

- 제10조의4(민감정보처리의 제한) ①공사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에게 제6조제2항 각 호 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공사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8장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본조신설 2017.7.31]

- 제10조의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5.16.>
 -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설치·운영하는 경우
 -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운영하는 경우
- ② 공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5.16.>
- ③ 공사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공청회·설명 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6.>
- ④ 공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6.>
- ⑤ 공사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4.5.16.>
- ⑥ 공사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8장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6.>
- ⑦ 공사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 ⑧ 공사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6.>
-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 5. 위탁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7.7.31][제목개정 2024.5.16]

제3장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제11조(수탁자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공사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 ②삭제 <2017.7.31.>
- 제12조(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①공사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개정 2024.5.16.>

-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4의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5. 위탁업무 관련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6.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 에 관한 사항
- ②위탁관리 계약 요구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부서에서는 위탁계약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7.7.31.>
- ④공사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연 1회 이상 교육 및 감독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위탁 교육 확인서, 개인정보 보호 관리실태 점검표, 사진 등을통해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9.12.26.>
- ⑤ 공사는 개인정보 취급 위탁 사업이 종료된 수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방지와 파기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해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13조 삭제 <2017.7.31.>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개정 2017.7.31.>

- 제1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소관 본부의 임원으로 한다.
 -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개인정보 보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삭제 <2019.12.26.>
 - 3.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4.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 5.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 6.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7.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 8. 삭제 <2019.12.26.>
 - 9.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 공사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

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16조(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지정 등) ①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실무 업무를 수행할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는 각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 ②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개인정보 침해 대응 및 조치
 -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및 개선 조치
 -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접수 및 처리
 - 4. 각종 개인정보 보호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취합
 -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참가
 -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위임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
 -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실무업무
 - ③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개인정보 취급자로 지정하여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
 - ④개인정보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31.>
 - 1. 취급하는 개인정보(파일 포함)에 대한 보호관리
 - 2.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시 보호관리
 - 3.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PC에 대한 보안관리

- 4. 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이수
- 제17조(안전조치의무) 공사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7.31]

- 제1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개정 2024.5.16.>
 -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6. 제14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 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 8. 삭제 <2019.12.26.>
 - 9.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10.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1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12.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13.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14.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②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될 수 있게 한다.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삭제 2017.7.31]

제19조(개인정보 보호 협의회) 공사는 개인정보 보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수 있다.

제5장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등<개정 2017.7.31.>

- 제20조(개인정보의 유출등)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은 법령이나 공사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공사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5.16.>
 - 1. 삭제 <2024.5.16.>

- 2. 삭제 <2024.5.16.>
- 3. 삭제 <2024.5.16.>
- 4. 삭제 <2024.5.16.>

[제목개정 2017.7.31][제목개정 2024.5.16]

제21조(유출등의 통지시기 및 항목) ①공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26.><개정 2024.5.16.>

-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4. 공사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②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우선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4.5.16.>
- 1. 정보주체에게 유출등이 발생한 사실
- 2. 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 ③공사는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유출등의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유출등의 사고를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신설 2017.7.31.><개정 2024.5.16.>

④공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목개정 2017.7.31][제목개정 2024.5.16]

제22조(유출등의 통지방법) ①공사는 정보주체에게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16.>

②공사는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제목개정 2017.7.31]

제23조(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이내에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 2015.5.19.><개정 2019.12.26.><개정 2024.5.16.>
- 1.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 2.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 ②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 ③공사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유출등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 ④ <삭제 2024.5.16.>

[제목개정 2024.5.16.]

- 제23조의2(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대응 매뉴얼 등) ①공사는 유출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등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 ②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 대응 매뉴얼에는 유출등 통지·조회절차, 영업점·인터넷회선 확충 등 고객 민원 대응조치, 현장 혼잡 최소화조치, 고객불안 해소조치, 피해자 구제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2024.5.16.>
 - ③공사는 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피해복구 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본조신설 2017.7.31] [제목개정 2024.5.16.]

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제2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4.5.16.>
 -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 제25조(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①공사는 청구자가 정보주체 및 정보주체의 정당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공사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이하 "열람

등 요구"라 한다)를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에 따라 청구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를 이용하여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③개인정보 취급자는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외부위탁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정정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 취급자는 정보주체의 요청 및 처리에 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공사는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 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24.5.16.>

제27조 삭제 <2017.7.31.> [종전 제27조는 제18조로 이동]

제7장 개인정보파일 등록<개정 2017.7.31.>

제27조의2(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공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

보파일 현황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개정 2024.5.16.>

[본조신설 2017.7.31]

- 제28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①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 취급자는 공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개인정보파일 등록신청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9.> <개정 2017.7.31.>
 -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5.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 6.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 7.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 8.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 9.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

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1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 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 ③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시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28조의2(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①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6.><개정 2024.5.16.>
 - ②공사는 상위 관리기관에 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상위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개정 2024.5.16.>
 - ③제1항부터 제2항의 등록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4.5.16.>

[본조신설 2017.7.31]

- 제29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및 관리) ①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4.5.16.>
 -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파기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5.16.>

- 제30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5.16.>
 - ②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 ③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 ④공사는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개인정보파일파기 관리대장'을 이용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7.7.31.><개정 2024.5.16.>

제8장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개정 2017.7.31.>

- 제31조(개인정보 취급자 접근권한 관리 및 인증) ①개인정보 보호분야 별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 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 ②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 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19.12.26.>
 - ③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④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 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개정 2024.5.16.>
 - ⑤삭제 <2017.7.31.>
 - ⑥공사는 개인정보 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7.31.>
 - ⑦공사는 권한 있는 개인정보 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

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7.31.>

- 제32조(비밀번호 관리) ①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 취급 자 또는 정보주체가 생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 운 숫자나 개인관련 정보를 패스워드로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 및 운용하여야 한다.
 - ②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는 비밀번호에 적정한 기간의 유효기 가(반기별 1회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
- 제33조(접근통제) ①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조치 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개정 2024.5.16.>
 -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 ②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개정 2024.5.16.>

- ③개인정보가 저장된 사용자별 노트북·이동저장매체 등의 반·출입 및 이용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하고 도난 또는 분실에 대비하여 패스 워드 설정, 중요 데이터 암호화 등의 보안성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에 대해 허용된 권한 이외의 복제, 출력 등의 이용 행위를 막기 위해 문서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 ⑤개인정보를 문서로 출력 시 출력·복사물에 공사의 명칭 및 로고, 출력자 성명, 출력 시간 등을 표시해 문서를 통제한다.
- 제34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공사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개정 2024.5.16.>
 - ②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 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 ③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에 고유 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 ④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인터넷망 PC에 저장해서는 안되며 업무용 PC에 저장할 때에는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저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 제35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①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

- 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개정 2024.5.16.>
-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
- 2.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
- ②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의 다운로드가 확인된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9.12.26.><개정 2024.5.16.> ③ 공사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7.7.31.> <개정 2019.12.26.>

[제목개정 2017.7.31]

- 제36조(악성 프로그램 등 방지) ①공사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 ②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이상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 ③악성 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프 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

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7.31]

제37조(입·출력자료의 관리) ①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 가 기록된 서면 등의 입력자료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자료와 개인정보가 기록된 자기테이프 등 기록매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활용이 종료된 출력자료는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 ②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1. 폐·휴지 수집업자에 매각 등 금지
- 2. 매각 및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 강구

가. 소각 시 : 입회인 선임 등

나. 매각 시 : 직접 파쇄 조치 후 재생지 용도로만 활용

제38조(홈페이지 등 개인정보 보호 관리) ①개인정보 노출 예방·점검 및 개인정보 노출 취약점 점검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홈페이지 자료 게재 시 개인정보 취급자는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참조한다.

제39조 삭제 <2017.7.31.>

제40조(오프라인으로 개인정보 이용·제공) ①보안 USB를 활용하고 불가피한 경우 CD/DVD를 사용한다. CD/DVD/USB내의 처리 정보를비인가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반드시 파일 내 암호 설정과 압축 시 암호설정 등의 2중 보안을 유지한다.

- ②개인정보가 저장된 CD/DVD/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를 보관·관리하는 경우 시건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의 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해야 한다.
- ③CD/DVD/USB를 통해 외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허용된 권한 범위에서 복사 또는 인쇄되도록 권한관리를 설정하여 관리한다.
- ④보안 USB는 분실, 도난 시 지정된 횟수 이상으로 패스워드를 잘 못 입력할 경우 또는 필요한 경우 데이터 보호를 위해 완전 삭제기능을 보유한다. 또한 도난 또는 분실된 USB가 사용될 경우 접속한 PC 및 네트워크 정보를 개인 E-Mail과 서버로 전송하는 추적정보 전송 기능을 보유한다.

제41조 삭제 <2017.7.31.>

- 제42조(물리적 접근제한) ①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②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③물리적 접근방지를 위한 별도의 보호시설에 출입하거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그 출입자에 대한 출입사실 및 열람 내용에 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공사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

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 ②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가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말한다.<개정 2024.5.16.> 1.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3.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
-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 ③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 4.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제9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개정 2017.7.31.>

- 제44조(적용범위) 이 장은 공사가 설치·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처리기기와 그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 제4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공사가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제목개정 2024.5.16]

- 제46조(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영상 정보업무 소관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 ②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5.16.>
 - 1. 개인영상정보 보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2의1.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 3.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3의1.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4.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 5.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47조(개인영상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지정 등) ①개인영상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는 그 팀장이 개인영상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가 된다.
 - ②개인영상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개인영상정보 침해 대응 및 조치
 - 2. 개인영상정보 처리실태 자체점검 및 개선조치
 -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 4. 각종 개인영상정보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취합
 - 5.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가 위임한 개인영상정보와 관련된 업무
 - 6. 그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실무 업무
- 제48조(사전의견 수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 제49조(안내판의 설치) ①공사는 정보주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 1. 설치목적 및 장소
 - 2. 촬영범위 및 시간
 -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 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 ②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공사가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 제49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한다.

[본조신설 2024.5.16]

- 제50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등)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 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5.16.>
 -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법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처리한 경우

-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목개정 2024.5.16]
- 제51조(보관 및 파기) ①공사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명정보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5.16.>
 - ②공사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5.16.>
 - ③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제52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공사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7. 이용 또는 제공한 개인영상정보의 업무처리 담당자
 - ②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관한 확인 시기)
 -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 ③개인영상정보 관리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을 활용한다.
- 제5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의 위탁) ①공사가 고정형 영상정

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 및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②공사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제목개정 2024.5.16]

제54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①정보주체는 공사가 처리하는 개인영상 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개정 2024.5.16.> ②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며, 공사가이러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이때에 공사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

- 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 1. <삭제 2024.5.16.>
- 2. <삭제 2024.5.16.>
- 3. <삭제 2024.5.16.>
- ④공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6.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업무처리 담당자
- 제55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정보주체의 개인영 상정보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 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6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①공사는 개인영상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 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공사는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제10장 보칙<개정 2017.7.31.>

- 제57조(처리 중인 개인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시행 전에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당해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적법한 처리로 본다. 다만, 법 시행 이후 기존의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새롭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및 이 지침에 따라야 한다.
 - ②법 시행 전에 법률의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법 시행 전에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기존의 수집목적 범위에도 불구하고 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새롭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목적으로 법 시행 전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58조(준용사항) 공사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중 이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시행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7.24.>

이 지침은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8.27.>

이 지침은 2013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5.19.>

이 지침은 201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7.31.>

이 지침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26.>

이 지침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 2024.5.16.>

이 지침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보유기간	대상 개인정보파일
영구	1. 국민의 지위,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 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준영구	1. 국민의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개인 이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신분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 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된 개인 정보파일
3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 되는 개인정보파일
1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 되는 개인정보파일
5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 되는 개인정보파일
3년	1.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파일 2.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 되는 개인정보파일 3.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단 다른 법령에서 증명서 발급 관련 보유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1년	1.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보고를 위해 생성한 개인정보파 일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	15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번호	개 인 정 보 파일 명	자료의 종류	생성일	폐기일	폐기사유	처리담당자	처리부서장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기관명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및 규모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유출등 신고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자				

ᄋᅕᄭᄀᆏᄉᄀ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유출신고접수기관 				

개인정보([]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

※ 아래 작성방	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	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성 명		전 화 번 호				
정보주체	생년월일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대리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열람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록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를 기가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	덕 간 황				
	[] 정정·삭제	※ 정정·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처리정지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_	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		나 같은 법	시행령	병 제4	1조제1
					년	월	일

요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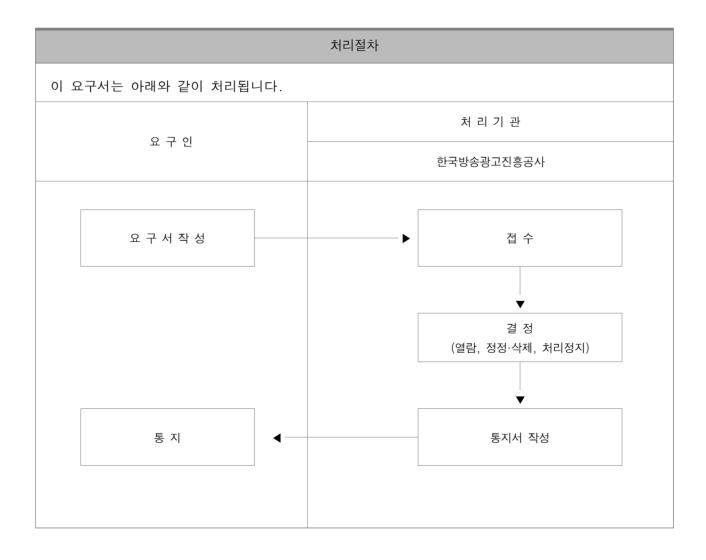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귀하

작성 방법

-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란에 $[\sqrt{\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sqrt{\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 3.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삭제'란에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란에 [$\sqrt{}$]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m²(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4.5.16.>

개인정보	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앞 쪽)
수신자 (우편	년번호: , 주소:)	_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_
통지 내용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물·인화물 []기타 열람 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②우송료 계(①+②)	원
사 유		_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_
	호법」 제35조제3항·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년 월 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직인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가.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나.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2.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라 지불합니다.
- 3. 열람제한, 열람연기 또는 열람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요구 내용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조치 내용		
□ 정정·삭제 □ 처리정지 결정 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6항 및 같은 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법시
	년 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mark>직인</mark>	일
	유의사항	
개인정보의 정정·삭 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 ŀ.	로 이의제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파일([]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 란은 변경등록시에만 작성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Ž	처리기간 7일	
공공기관 명칭 주소		등록	부 서	전화번호	
등록형	항목	등록정보	변	경정보 및 변경사유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Ų 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 제공받는 자	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	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u> </u>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 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부서

팀장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작성일	작성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		
생성일자	개인정보 취급자	
주요 대상 업무	현재 보관건수	
파기 사유		
파기 일정		
특기사항		
파기 승인일	승인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파기 장소		
파기 방법		
파기 수행자	입회자	
폐기 확인 방법		
백업 조치 유무		
매체 폐기 여부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제 공 형태	기간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제공□ 열람□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영	상정보(□	존재확9	인 [] 열람)) 청구	'서	처리기한
※ 아래 유의사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전 화 반	호		
청 구 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	의 관계		
	주 소						
	성 명			전 화 반	호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생년월일						
2 7 70	주 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	1.01.0	01 18:30 ~	2011.0	1.01 19:00)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 청하지 않으 면 처리가 곤 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l 007	² 00대로 0	인근 CC	CTV)	
	청구 목적 및 사유						
「한국방송광고 인, 열람을 청구	!진흥공사 개인정 합니다.	ງ보 보호지?	침」제	54조에 따라	위와 같	같이 개인영	상정보의 존재확
		년	월	9	<u> </u>		
					청구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귀하							
담당자의 청	구인에 대한 확인	<u>.</u> 서명					